

인천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가단22202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9. 28. 접수 제4318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A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A의 처제이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는 2018. 11. 23. 및 2019. 3. 11. A에게 각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A는 배우자인 E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0. 9. 28.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 채무자를 A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3182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의 적극재산은 시가 42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뿐이었다.

다.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1)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8. 8. 27. 소외 회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보증원금 39,960,000원, 보증기한 2019. 8. 27.까지(이후 보증원금이 37,962,000원, 보증기한이 2021. 8. 23.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2018. 8. 27.경 소외 회사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장차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F은행으로부터 2018. 8. 27. 44,400,000원을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받았는데, 2020. 11. 17. 원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F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은 후 2021. 3. 11. F은행에 38,552,6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외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인 A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38,552,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채권을 갖게 되었다.

라. A의 파산

- 1) A는 2021. 1. 5. 인천지방법원 2021하단8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 2)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2021. 6.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3) 인천지방법원은 2021. 8. 27.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1. 11.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2022. 6. 2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됨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부인으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2022.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22. 7.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인권 행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권 행사의 소인바, A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이 사건 구상채권이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 따른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할 수 있다.

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

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 행위 당시 자산 초과 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57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이 유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특정 채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행위는 A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A 소유의 1/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A에 대한 2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을 뿐이고, 당시 A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나 A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선의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A 소유의 1/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부인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A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